

# 文清公遺事 沙溪手筆



## [해제]

「文淸公遺事」는 沙溪 金長生이 문淸공 정철의 행장을 草한 것이다. 이것이 순조 8년 1808년에 책으로 엮어졌다. 「文淸公遺事」는 송강 정철과 거의 동시대를 살았던 김장생이 송강 정철의 삶을 지켜보고 쓴 행장이기에 송강을 중심으로 벌어졌던 초기 권력 투쟁인 당쟁의 사실 관계가 소상히 기록되어 있다. 「文淸公遺事」는 송강 정철의 삶이 간략히 약술되어 있어, 연보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 그러나, 건저 때의 일은 다른 어떤 문헌보다 소상히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송강 정철의 삶의 재구와 인물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특히 「文淸公遺事」의 저자인 사계 김장생은 문묘에 배향된 성현 18인 중의 한 분이니, 글의 공신력이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옛 성인이 어찌 함부로 사람을 평가하였을 리 있으며, 책임이 없는 글을 쓸 수 있었겠는가. 「文淸公遺事」에 드러난 송강 정철에 대한 사계의 평은 다음과 같은 본문 인용으로써 정리 할 수 있다. 대범 인품이 군자가 좋아하고 소인이 미워하면 길인이요, 군자가 미워하고 소인이 좋아하면 그것은 불길한 사람이다. 송강 같은 위인은 김하서, 율곡 이이, 우계 선군자, 사암 구봉령, 기고봉 대승, 신응시 홍성민, 이해수 등 제 군자가 좋아했고, 정인홍, 이발, 이산해, 이이첨, 이홍로, 이경전, 한효순, 허상, 홍가신, 송언신, 홍여순, 신경희, 송선, 윤삼빙, 심경, 김우성, 임혁, 임연, 송응형 등이 미워했다

## [목차]

文淸公遺事 沙溪手筆

松江相公行狀草

量

[원문]

沙溪手筆

文清公遺事

松江相公行狀草

松江相公行狀草

公人物 夙成聰明過人十歲前通文義 將大進遭  
乙巳門禍父兄無意於教誨 累年失學不能讀書  
及長始有志於學 以此不能多讀聖賢書余聞公  
之言

公稍長從奇高峯大升學近思錄等書以知向方  
又出入金河西麟厚之門常慕其爲人稱道大節  
出處之正雖退溪不可及也

公之姊氏爲 仁廟淑儀公十歲前入東宮 明廟  
爲大君時常同處遊戲情愛甚熟及長公登第  
明廟見榜目喜甚呼兒名曰某氏爲及第也卽賜  
酒饌 使六七人負送 以助宴需 且令由西門外而  
行欲於城上見之云喜甚可知

及爲正言 明廟從兄景陽君謀奪妻家財物以  
致擊妻甥殺之滅跡因屍親起訟成獄景陽君父  
子將代死公執法不撓 明廟私謂公曰吾兄將死  
欲公寬貸公終不從 上教及景陽君父子竟死  
獄中明廟 以此見過數三年廢置閒職不得落  
點

丙子年東西之說盛行公與時不合不欲從仕解  
直提學下湖南 上聞之 私謂公曰願勿下去將  
爲大用公竟下去余親聞公之言

戊寅年間栗谷來在楊花渡公往見之謂栗谷曰  
兄推許李潑然終必傾陷吾兄矣栗谷明其不然  
余亦在座曰豈有如此公曰 後日必見之果如其  
言吾深服公先見之明至于今不忘也

爲江原全羅 兩道方伯摠合道內貢案繇役均一  
詳定 民甚便之 不久廢而不行

己丑十月公以前二相在高陽新院看長子起溟  
之葬事時鄭賊逆變起公貽書招我早朝往見公  
卽言曰鄭汝立必逃躲也余答曰豈有逃躲之理  
坐中諸客五六人散去只有公之胤宗溟及尹孝

源而已公曰吾欲肅拜何如吾曰自 上有召命則可也此時肅拜迹涉乘時極爲不可公曰逆賊欲害君父吾爲重臣在外觀變不入其可乎其於人臣之義如何君之所言乃避嫌也吾曰此時肅拜則公必爲推官又爲功臣李潑白惟讓等之死以公之力其可救乎如此大獄必有橫罹者公其能一一救之乎公曰 李潑白惟讓由我能生則渠輩必大德之矣君之所言終是避嫌耳於人臣分義則未也日已晚矣余再三請去公曰姑徐之乘馬同轡入來吾則由新門而入公宿西小門外夜二三更汝立逃躲之啓本入來乘曉送人通報公曰已知之矣其後牛溪及諸公皆勸肅拜三四日後入闕肅拜政院及玉堂諸入番之人皆驚駭云云

公入相早曉往推鞠廳時歷往牛溪家乘昏出來亦往見之凡事無不相議爲之

公爲推官時余有所言事罷漏時尋公所在處則公宿于昌德宮門外私家直入寢室公擁衾而坐吾言事畢公曰擬汝立黃海都事及金堤郡守望吏曹校正何如 余曰此事決不可爲也吏曹何能逆知此不過公罪耳以公罪置人於死地其可乎公曰以公罪或罷職或奪告身比比有之鄭賊若得領兵之任爲國之害不細雖公罪論啓何害也吾曰大不然近日論啓之人必至於死今若自上復震怒下獄從重罪之則臺諫其能復論啓救之乎渠等之意以爲必至於死結怨不少此事不可爲之再三論辨 最後公曰此乃牛溪所主張也吾曰雖牛溪之言不可施行未久正言黃慎竟論吏曹自 上怒之斥公極非之黜黃慎爲高山縣監

公爲左相柳公成龍爲右相肅拜後數日來見公

而吾適往見公公曰而見昨日來此矣吾問曰柳公有何言也公答曰柳云與公俱爲國重任欲爲國重大之事公曰如今重大之事 何事也柳云方今重大之事 莫如建儲公曰然 建儲乃今重大當并爲之但領相從之乎領相卽李山海也柳公云吾兩人爲之則領相 何不從之有相約而罷此事何如或

有言如此大事不可輕易爲之云余曰此固重大慮有禍敗也人欲爲善事卽止不從終爲何等人也雖有禍敗不可不從公曰君言是也通于所知諸宰再與右相相議通書于領相約日期會于闕下領相不來又約日與右相詣闕領相又不來其後因沈士訥宗敏聞之領相以左右相所通書卽上達因以不近之讒疑惑上聽無所不至上震怒使別監往復領相竟止不爲副提學李誠中爲建儲將上筭在家方構草所知別監要見李辭以有事令後日更來其人云有大不得已之事必欲見之然後出見則言曰聞玉堂以建儲將上筭云自上震怒吾持御札六度往還領相宅此時不可上筭以在袖中御札出示之累次往復其大如椽未及上筭以特命出爲忠清監司矣

余見松江之夕龜峯往見李領相山海曉頭還來曰李相有將死之形憂愁鬱悒見其容貌異常其怪之問曰容貌何以如此乎李答曰吾將死矣季涵則不然也有一長者必欲殺我我死也龜峯曰豈有如此之理乎李云吾在此外間之所爲無不知之矣李之父子一邊以不測意外之言因宮掖動搖讒間又一邊因龜峯言渠已知其幾微使之通報牛溪松江冀其止之也龜峯還自李家言於吾吾曰昨曉往見松江其所言與此合李必知其幾也其所謂有一長者乃牛溪也竟以此事被讒致敗至於竄江界圍籬

在圍籬中讀書不撤誦大學小註書于圍籬長木白以盡書

歲己亥俞大禎謂申敬叔曰吾與李弘老有厚分辛卯年吾爲翰林弘老以佐郎在喪要見我往見之則弘老曰我欲捉左相鄭某吾曰何以捉之弘老曰有可捉之事吾爲大同察訪時金公亮欲納驛馬以木十二同給之自上喜甚卽以銀帶賜給以掛諸壁上者指示之曰此銀帶是也吾曰雖如此何以捉鄭某也弘老曰又有可捉之事於此有御札欲開冊匣出示之吾揮手止之曰不出不出他人雖爲之公不可爲乃囑安德仁李元長李瑱尹宥李晟慶等上疏弘老又言鵝溪推戴信城君將欲建儲國事吾輩爲之他人不欲與之云吾卽

驚駭中心以爲必當絕交矣此奴相交他日必蒙大禍交道已絕及出六品爲伊川弘老脫喪出錢東門外諸人皆行酒至於弘老以酒盃進之吾以扇揮之盃落地上曰與公交道已絕公已知之左右之人皆怪之矣此乃弘老在朝時所言也非被罪後也俞之言不虛也

壬辰公在定州賓廳具思孟具成與王子肅拜金嬪送酒饌具之父子推而讓之進于公前公曰此饌非相臣所食也起避之以此出爲兩湖體察使雖東異色之人皆以公所處者爲難

在定州公謂柳相成龍曰公與我同事陷我不測之地一不顧問與人共事者乃如此乎柳答曰吾亦知令公非之但疑我太甚云故不敢顧問云云在定州公謂柳相成龍曰李潑老母穉子何以殺之乎柳曰令公則可以救死乎公答曰吾則救死也柳曰公其能然乎

丁酉春金公辟爲戶判吾以正郎同行往兩湖一日金公謂我曰己丑年吾妻謂余曰鄭某人謂好人乃今見之不然也何以言之乘時入來其意以爲此時渠何能爲也云爾以此知非其人也云云吾答曰余意亦然當初賊之事出也鄭松江欲爲肅拜招我議之吾力止之曰此時肅拜跡涉乘時極爲不可松江曰君之所言乃避嫌也吾爲重臣而逆賊欲殺害君父此時觀變不出於人臣之義何如哉金公曰松江之言然矣吾若當此亦當肅拜松江所爲不過也金公因言己丑年鵝溪家送言于吾曰鄭某欲殺吾與君頻頻恐動之吾疑鄭某因何故至欲殺我往見鄭某察其辭色更察所爲全無是事乃知虛言也其意蓋欲與我同伴構陷松江也其欲論吏曹之言乃李希參所傳云云希參往牛溪家聞牛溪與松江相議之說傳于李家也兩公之不密可知也

余言金公曰李誠中所知有別監乎答曰有之矣吾曰庚寅年別監持御札往來李議政家事公聞之乎答曰此則未也李誠中爲副提學欲上劄已書正本未及上達出爲忠清監司吾代爲副提學卽上劄云

東人深疾西人必欲傾陷所由來久矣甲申年宋

言慎以全羅巡撫御史往羅州 言于奇孝曾曰西  
 人意在於興寧君不在於 今上 其言極爲兇慘  
 李潑之輩造作無形悖惡之言流入宮禁陷西人  
 不測之地使 上厭惡沈義謙排擯不容於朝宋言  
 慎爲城上所歷數沈義謙之黨如朴淳朴應男李後  
 白先君子尹斗壽尹根壽鄭某鄭惟一具鳳齡具  
 思孟辛應時李海壽洪聖民數十人以啓其後李  
 潑爲大司諫以遺漏於義謙之黨加書李珥成渾  
 啓達鄭仁弘爲掌令論罷沈義謙時啓以沈義謙  
 與尹斗壽尹根壽鄭某等相與締結作爲腹心窺  
 觀形勢云許筠論罪栗谷上劄曰其志將欲何爲  
 栗谷語龜峯曰今次吾被罪則彼輩欲爲功臣龜  
 峯曰何以知之栗谷曰其形跡已著以李浚慶爲  
 原頭凡所論之言其機軸已爲顯然也至於辛卯  
 公之被罪也自 上猶恐其黨類之多擯斥西人  
 無所不至榜示朝堂以示惡之之意及壬辰之亂  
 諸罪人皆放還惟公不得蒙恩無異於鄭賊至於  
 國人皆冤其無罪西 幸時松京士民等并訴冤  
 而後始得放之此必有所以然也癸巳公赴京還  
 上密問申礪曰鄭澈往 上國謀立東宮云其言信  
 然乎申礪對之以明其不然卽語其所親者丙申  
 丁酉年間 洪可臣爲洪州牧使 時來見龜峯曰鄭  
 某爲體察使時以所知之人布置大邑守令將有  
 大志云彼洪雖嫉松江何敢以此兇言加之於人  
 也彼輩捉人底手段類如此後來所爲益著矣彼  
 輩因金公亮以虜受之譖浸潤之訴動搖金嬪宮  
 禁之事非士大夫之所見聞不敢備書亂後王子  
 駙馬爲金嬪設宴達城尉言大凡復讐之事金嬪  
 曰勿言復讐之事吾至今不得復讐云云以此觀  
 之金氏猶未解惑也  
 己酉冬余以淮陽府使在京未赴任友人沈宗直  
 赴江西任所宿淨土寺鄭時晦要我同宿于寺乘  
 昏出去座中有金昌一沈宗道沈宗忱沈宗敏沈  
 宗直沈宗立又有不知者數人擾擾不安靜翌曉金  
 昌一謂鄭時晦曰公之所論與前日不同何也時晦  
 笑而指我曰聽此尊丈之言改之昌一向吾欲聞  
 之吾欲以客煩待後日言之爲對反以思之所當  
 言之事雖被人言何懼且有屈弱之嫌乃言曰松



江之敗專由於建儲以吾前日所聞曲折細言之  
曰持御札別監之事士訥詳細知之宗敏答以  
其別監之名乃金希壽也吾知之矣宗道曰然則  
柳相所爲建儲之事 善與不善何如吾曰吾則自  
初已謂爲善之事宗道更無一言及之昌一亦不  
違異無一言問之察其色以吾言盡信而慙然也  
癸丑余遭禍患時金頻數來見以致款曲且見崔命  
龍爲言吾今則與金希元爲親信之友云云必以吾  
言爲實然不敢非之且其所見亦異於前日也其  
冬沈宗道爲淳昌郡守下全州見府尹康復誠曰  
鄭某之事意謂士論已爲歸一士類間有一種議論  
以吾之所言一一言之康復誠對崔命龍傳沈哥  
之言

柳成龍爲北人所駁 以韓托胄史彌遠比之當懸  
之蒿街且曰田園遍一國柳相語人曰世人雖憎  
嫉季涵猶不敢以貪鄙之言加之我不如季涵可  
知也

吾以戶曹正郎在全羅與金公粹言一日往見松  
相下人以分發進呈松相見後送于吾取而見之  
府啓云禁府不嚴使永慶得以自盡色郎廳請罷  
吾云獄事人多有言如此等事人必有言處事如  
此可歎可歎松江卽貽書尹大憲曰此等事何不與  
老夫相議輕易發言舉其書示我送之其答書云  
事已至此奈何奈何至壬寅以永慶之事構虛捏  
造論牛溪時尹義立論啓極重金公粹非義立曰  
吾因金某聞松江貽尹某之書永慶之事松江猶  
不干預況成某乎是何啓辭如此之誤也尹義立  
見沈宗直言金判書信金某之言吾則不知而爲  
之其時徐玄紀以都承旨入直姜籤亦承旨入  
番洪慶臣來見姜言吾所見鄭尹兩相以書往復  
之事洪去後姜傳玄紀玄紀見我云可晦必以丈  
爲未便也吾答曰鄭尹兩相皆是我親切之人雖  
對可晦亦言之實事如此何害也玄紀云可晦等  
欲諱其啓辭隱之矣

甲申秋洞人徐誼設酌招之朴教官洞洞後改名洲爲主  
客其門生十五六人會集酒闌朴丈洞之謂其門  
徒等曰今之人謂鄭某氏小人也吾則不知也忠  
清孝友慷慨之人也何以謂之小人也諸生謂尹



三聘曰君聽先生之言尹也嘿無一言諸生多所侵之尹也乃言曰當初先生不言是非吾心已定後今始言之未知其可也其門徒中惟沈憬尹三聘付托時論 論議極偏邪他人不至已甚矣  
庚子年余爲安城郡守金宇顛爲客再度過去言及栗谷先生之事吾問公與栗谷牛溪皆切乎金公未諳吾言曰何絕之有乎吾卽曰兩人皆是親切乎金公曰吾不知而答之兩人豈不切乎吾於栗谷今亦不異於前日也吾問牛溪何如金公曰牛溪則相見於義州言言庇護季涵非矣吾曰公之非季涵者何事公曰己丑季涵殺李潑崔永慶之事公不知乎余曰李潑初出於賊招季涵啓辭救而得釋定配於遠方累出於賊招不得救而死季涵何預於其間哉永慶則終始救之何謂殺也大槩逆獄大事推官何由任意處之乎金公曰吾在星州定配北道救解李潑之事未之知也公於季涵非師傅非父兄勿爲救之萬世公論可畏吾則崔李兩人季涵殺之吾意已定之余曰公之所定真是乎萬世公論公亦可畏矣公之友何以殺李潑老母穉子乎金公曰所謂吾友者指何人也謂柳成龍乎吾謂柳成龍是乎吾曰己丑獄事無罪橫罹而死者多誰謂季涵十分是乎金公曰季涵與柳成龍何可比而同之乎余曰所處之事是則同謂之是非則同謂之非柳公則公之所友故歇看治之季涵公之所嫉故深治之其可乎金公曰吾於季涵有何所嫉乎金公往依清州韓察訪家以吾所問答之言一一傳之韓察訪問安城郡守金某元人物 何如人也金公曰好人也吾之門生閔後騫在其隣家來傳曲折  
丁未年黃思叔來居扶餘訪我于連山余曰松江之敗由於公公亦何以隨衆口而低看松江乎思叔曰松江之敗何由於我乎余曰公爲正言時論李山海故山海由左腹行讒間外使群不逞之徒構虛捏造駁擊無遺力而其讒間不近之說不敢顯然言之於外托言鄭某枉法殺崔永慶斷成罪案至於不干死獄之人皆歸之松江永慶之獄松江累爲啓辭救解至其再鞫亦非松江之所知也彼挾憾下石之輩亦豈不知永慶之死實不由於

松江而然也要作陷人機弄耳不知其所以者  
爲衆口所囂同聲唱之間有知其事由如柳成龍者  
逢迎 上意有患失之心不敢違異相與治罪舉朝  
皆非之若有大罪者然至於吾輩之人從而和之  
或不免染污於其間可笑之甚也此公之所目知  
而松江之敗實由於公公亦爲衆所動而非之不  
亦誤乎思叔曰松江之敗豈但由於我也云當初  
聞之自 上震怒斥遠松江 已爲罷黜猶爲未足  
使洪汝諄爲大司諫欲加罪審議于典翰禹性傳  
性傳諱而不見又見副提學金晬議罪晬曰大臣  
黜外已重何必加罪洪也卽爲上達以此特命  
出金晬慶尙監司性傳亦以松江之黨被罪金晬  
與禹性傳非松江之所親而知彼行讒所由不與  
山海汝諄同事 上亦非之終身不得志  
龜峯宋公爲東人李潑輩所嫉陷之死地使不得  
容於世無所於歸公在光州時招而舍之人服其  
義焉及公入相又有讒之於上曰宋某止接於  
鄭某家教儒生上疏謀害宰相且怨望朝廷使之  
生事教趙憲上疏建儲 命拿鞠受刑數次而解  
放人爲龜峯謀之者曰不可近松江家遠避之宋  
公不從其言常常出入公亦招致請見不以爲嫌凡  
人所不及處也  
歲辛亥教理李景稷來言其父一日設酌招徐  
判書消及鄭參判協飲鄭協怨望鄭某及洪益城  
聖民多有不好之言徐判書非其言卽責之曰令  
公誤矣鄭洪兩人於令公有大恩德何以怨之乎  
令公家所爲是乎令公之弟鄭慄何以至於死乎  
協卽脫笠起而拜曰無所歸怨而然也盖己丑  
賊之出也鄭彥信以右相在推鞠廳大唱曰告者  
數三人斬首則可無此事在座之人莫不駭愕洪  
公聖民不勝痛憤人有上疏言之自上下問推官  
金貴榮曰左耳偏聾不得詳聞李山海則以爲依  
稀聞之鄭彥信上疏發明與汝立不親之狀且言  
一不通書云云 上震怒仍下彥信與汝立往復  
書札曰頃日引見三公時彥信仰天大笑言汝立  
不反之由又言一不通書此十九張何人書也謂  
余無目乎卽日三司以彥信欺罔論啓卽依允公  
言于推鞠廳曰彥信雖無識身在大臣不可遽賜

死當請刑取服然後定罪可也李山海不聽反復言之乃許入啓自上不許欲再啓左右皆不答與洪公聖民詳論開諭然後入啓受刑一次又請遠竄乃得免死當初彥信之疏鄭協兄弟相議製進及其父將死慄悔恨而死故徐玄紀所謂令公家所爲是乎者乃指此也

大凡人品君子好之小人惡之則乃吉人也君子惡之小人好之則乃不吉之人也如松江之爲人栗谷牛溪先君子思庵具鳳齡奇高峯大升辛應時洪聖民李海壽諸君子好之鄭仁弘李潑李山海李爾瞻李弘老李慶全韓孝純●●許鏞洪可臣宋言慎洪汝諄申景禧宋瑄尹三聘沈憬金佑性任奕●●宋應洞等惡之此輩造作虛語陷人不測謀爲己功到今心術破露無所不至其媚嫉松江宜矣松江之爲君子不辨可知其●趨時付托圖爲發身者雖千萬人非之於松江何損焉公持身清簡守令之饋素不相知之人雖扇柄不受雖所知之人非用友至清蜜升亦受不平生嫉惡大甚不能容人之過必發說於人故人多怨之者

公事父母以孝待兄弟怡愉喪葬祭祀必以禮凡人所不及吾所親見常所歎美但傷於酒色不能擺脫此其欠也

公胸懷疎爽凡有所懷少無含蓄必言之於外言語豪放多有動人處但無大臣雄偉寬弘容人之量

一日過松翁之舊居感先生之遺蹟訪先生之後孫語問穉功出示一冊子仍歎歎之言曰此乃吾先祖文清公狀草而沙溪金先生記述并書也虫蠹剝蝕土氣蒸濕字忘漫漶幾乎不可辨矣子盍爲我臧□以壽其傳非但一家之私抑不斯文之幸歟余曰諾兩先生之隻字片言猶爲後生之興感況此一帙不入於兵燹之中而復出猶數百年之後始知沈淵之珠不爲遺棄之物藏壁之書終有可出之日則是書之隱顯亦有時也歟於是袖之歸糊塗爲帖言讀之松翁之遺事沙老之手澤完然一私否矣烏不休哉其得失顛末始焉傳之於畸翁之子洎中焉失之於洎之外裔朴姓人終焉歸之於

松翁之後孫在勉云爾

崇禎後三戊辰仲春下浣書

[현대역]

송강 상공(松江相公)f1h 행장초(行狀草)

공(公)은 인물이 숙성하고 총명이 남달리 뛰어나 10세 전에 문리(文理)를 통하고 장차 크게 진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을사년(명종 1, 1545)에 가문의 화f2h가 있는 이후로 부형들이 가르칠 생각을 두지 않아 여러 해 동안 실학(失學)하여 글을 읽지 못하다가 장성해서야 비로소 학문에 뜻을 두었다. 그래서 성현의 글을 많이 읽지 못했다는 공의 말을 내가 들었다.

공이 조금 자라서 고봉(高峰) 기대승(奇大升)f3h)에게 「근사록」 등의 글을 배워 향방을 알게 되었다. 또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f4h)의 문하에도 출입을 했는데, 항상 그 위인을 사모하여 대절과 출처의 올바름을 일컬으며

비록 퇴계라도 미칠 수 없다고 할 정도였다.

공의 누님이 인종(仁宗)의 숙의(淑儀)였기 때문에, 공은 10세 전부터 동궁에 드나들었는데, 이때는 명종이 대군으로 있었다. 둘은 늘 함께 놀고 정의가 아주 돈독했다. 장성한 뒤에 공이 급제를 하자, 명종이 방목(榜目)을 보고 몹시 기뻐 아이 때 이름을 부르며 “정철이 급제했구나.”라고 하였다. 명종은 즉시 주찬을 하사하여 육칠 명으로 하여금 지고 가서 연회의 수용(需用)을 돕고, 또 서문 밖으로 가게 하여 성 위에서 그를 보고자 하셨다 하니, 그를 얼마나 좋아하셨는지를 알 수 있다.

그 뒤에 (공이) 정언(正言)이 되었을 때 일이다. 명종의 종형인 경양군(景陽君)이 처가의 재물을 빼앗으려고 서처남(庶妻男)을 불러다가 죽이고 자취를 없애버렸다.

이 일로 죽은 사람의 친척이 소송을 일으켜 옥사가 일어나고 경양군 부자(父子)가 사형을 당하게 되었다. 공이 법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자 명종이 사사로이 공에게 말했다. “내 형이 죽게 되었으니 공이 너 그러이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공이 끝내 명종의 교지를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경양군 부자가 결국 옥중에서 죽으니, 명종이 이것으로 허물을 삼아, 수삼 년 동안 한직(閑職)에 폐치(廢置)하니, (공은) 낙점(落點)을 받지 못했다.

병자년(선조 9, 1576) 동서(東西) 봉당의 논란이 극성을 부릴 때, 공은 시류배들과 영합하지 않았으며 벼슬하기가 싫어져서 직제학(直提學)을 그만두고 호남으로 내려갔다. 임금께서 이를 듣고 가만히 공에게 이르시기를, “내려가지 말라. 장차 크게 쓰리라.”고 했지만 공은 끝내 내려갔다.

이것은 내가 직접 공을 통해 들은 말이다.

무인년(선조 11, 1578)에 율곡(栗谷)이 양화도(楊花渡)f1h)에 와 있을 때에 공이 가서 보고, 율곡에게 말했다. “형이 이발(李潑)f2h)을 떠받들고 지지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반드시 형을 위험에 빠뜨릴 것입니다.” 율곡은 그렇지 않다고 명백히 했다. 나도 그 자리에 있다가, “어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라고 했다. 그러나 공은 “뒷날 반드시 그걸 알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더니, 과연 그 말대로 되었다. 나는 공의 선견이 밝음에 깊이 탄복했고 지금까지 잊지 못한다.

(공은) 강원도 전라도 지방의 관찰사가 되었을 때에, 도내의 공안(貢案)f3h)과 요역(徭役)f4h)을 모두 합하여 균일하고 자세히 정하니, 백성들이 매우 편하게 여겼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폐지되고 시행되지 않았다.

기축년(선조 22, 1589) 10월에 공은 전에 이상(二相)f9h) 지냈던 사람으로 고양신원(高陽新院)f10h)에서 큰아들 기명(起溟)의 장례 일을 보고 있었다. 이때에 정여립(鄭汝立)f11h)의 역변(逆變)이 일어났다. 공이 편지를 보내 나를 부르기에 이른 아침에 가보았더니, 공이 곧 말했다. “정여립이 반드시 도망을 칠 것입니다.” 내가 대답했다. “어찌 도망칠 리가 있겠습니까?” 좌중에 있던 사람들 오륙 명이 흠어

저 가고, 다만 공의 아들 종명(宗溟)과 윤효원(尹孝源)만 있었다. 공이 말했다. “내가 숙배(肅拜)f12h 를 할까 하는데 어떤가?” 내가 말했다. “임금님께서 소명(召命)이 있으시다면 모르거니와 이런 때에 숙배를 하시면 마치 기회를 노리는 듯한 혐의가 있어서 아주 옳지 못합니다.” 그러자 공이 말했다. “역적이 임금을 해치고자 했는데 내가 충신이 되어 밖에 있으면서 변을 구경만 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되겠는가?”

그것이 신하의 도리에 어떤가? 그대가 말하는 것은 바로 혐의를 피하라는 것이겠지.” 내가 말했다. “이 때에 숙배를 하시면 공께서 반드시 추관(推官)f13h이 될 것이고, 또 공신도 되겠습니다만, 이발이나 백유양(白惟讓)의 죽음을 공의 힘으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같은 큰 옥사에는 반드시 억울하게 걸려드는 자가 있을 터인데, 공이 능히 하나하나 구해줄 수 있겠습니까?” 공이 말했다. “이발과 백유양이 나 때문에 살게 된다면 저들이 반드시 크게 고맙게 여길 것이다. 그대의 말은 결국 혐의를 피하라는 것뿐이지, 신하의 의리에는 맞지 않다.” 날이 이미 늦어서 내가 재상 가겠다고 하자, 공이 좀 더 천천히 가라고 말했다. 말을 타고 고삐를 나란히 하여 성안으로 들어왔는데, 나는 신문(新門)으로 해서 들어오고 공은 서소문(西小門) 밖에서 잤다.

밤 이삼경에 정여립이 도망쳤다는 계본(啓本)이 들어와 새벽에 사람을 보내서 통보를 하니, 공은 이미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 뒤에 우계(牛溪) 성훈(成渾)f14h과 제공들이 모두 숙배를 하라고 권하여 삼사 일 뒤에 대궐에 들어가 숙배를 하니 정원(政院)과 옥당(玉堂)에 입번(入番)한 모든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고 한다.

공이 재상(宰相)이 되어 이른 새벽에 추국청으로 갈 때에도 우계의 집에 들러서 가고, 저녁 때 나오면 서도 역시 찾아가 모든 일을 상의해서 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공이 추관(推官)이 되었을 때, 내가 할 말이 있어서 파루(罷漏)f15h 칠 시각에 공이 있는 곳을 찾아갔더니

공이 창덕궁 문밖의 사가(私家)에 묵고 있었다. 곧바로 침실로 들어가니 공이 이불을 끼고 앉았다. 내가 할 말을 다하자, 공이 말했다. “정여립을 황해도사와 김제군수로 천망했던 이조(吏曹)를 치죄하는 것이 어떤가?” 내가 대답했다. “이 일은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조가 어떻게 이렇게 될 줄을 미리 알았겠습니까. 이는 공죄(公罪)f16h에 불과합니다. 공죄를 가지고 사람을 사지(死地)에 몰아넣으면 되겠습니까?” 그러자 공이 말했다. “공죄를 가지고 간혹 파직하기도 하고, 혹 고신(告身)을 빼앗는 수도 자주 있다. 정여립이 만약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는 직책을 얻었다라면 나라의 해가 적지 않았을 터이니, 비록 공죄일지라도 논계(論啓)를 하는 것이 어찌 해롭겠는가?” 나는 말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래 논계된 사람이 반드시 죽음에 이르렀는데

이제 만약 임금께서 다시 진노하시어 하옥시키고 중죄로 다스리게 하신다면, 대간(臺諫)이 다시 논계해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저들이 생각하기를 꼭 죽게 될 줄로 알고 원망하기를 적잖게 할 것이니, 이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재상 논변을 하니, 최후에 공이 말했다. “이는 우계의 주장이다.” 내가 말했다. “아무리 우계가 말했을지라도 시행해서는 안 됩니다.” 오래지 않아 정언(正言) 황신(黃愼)이 결국 이조(吏曹)를 말하니, 임금께서 노하여 척출을 했고, 공이 극진히 잘못이라 하여 황신을 내쳐 고산현감을 삼았다.

공이 좌의정이 되고, 유성룡f17h이 우의정이 되었는데 숙배를 한 뒤 며칠만에 공을 찾아가려 했다.

내가 마침 가서 공을 보았더니, 공이 말했다. “이현(而見)이 어제 여기에 왔었다.” 내가 물었다. “유공이 무슨 말을 하던가요?” 공이 대답했다. “유가 이르길, ‘공과 함께 중임을 맡았으니, 나라의 중대한 일

을 하고 싶소.’라고 했다. 내가 말하길, ‘지금 나라의 중대한 일이 무슨 일이오?’라고 하자, 유가 이르길, ‘지금 중대한 일은 건저(建儲)f18h보다 더 한 것이 없소.’ 내가 말하길, ‘그렇소. 세자책봉 문제가 지금의 중대한 일이니, 함께 말해 봅시다. 다만 영상(領相)이 따를지 모르겠소?’라고 했다. (영상은 바로 이산해f19h였다.) 유가 말하길, ‘우리 두 사람이 말하면 영상이 어찌 따르지 않을 리가 있겠소.’ 하여 서로 약속을 하고 헤어졌다. 이 일이 어떤가?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 같이 큰 일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던데.” 내가 말했다. “이 일은 실로 중대합니다.

그런데 화패(禍敗)가 있을까 염려하여, 좋은 일을 하려다가 곧 중지한다면 결국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비록 화패가 있을지라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공이 말했다. “그대의 말이 옳다.” 공은 알고 지내는 모든 재상에게 알리고, 다시 우상과 상의하여 영상에게 편지를 보내고, 날짜를 약속하여 궁궐(宮闕)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영상이 오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날짜를 잡아 약속을 하고, 우상과 함께 대궐에 나갔는데, 영상이 또 오지 않았다. 그 뒤에 사눌(士訥) 심종민(沈宗敏)을 통해서 들어보니, 영상이 좌우상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곧바로 임금께 올리며 가당치도 않은 참소의 말로 임금을 현혹시키기를 갖가지로 하였다. 그래서 임금이 진노하고 별감(別監)을 영상에게 보내, 결국 되지 않도록 중지시키고 말았다.

부제학 이성중(李誠中)은 세자책봉을 위해 차(筭)를 올리려고 집에서 막 초(草)를 잡고 있었다. 그때 알고 지내던 별감이 뵈자고 청했다. 이성중이 지금은 바쁘니 뒷날 다시 오라고 했으나, 별감이 매우 부득이한 일이 있어 꼭 만나 봐야겠다고 하므로 나가서 보았다. 별감이 말했다. “옥당에서 세자책봉 일로 차를 올린다는 것을 들으시고 임금께서 진노를 하셨답니다. 내가 여섯 번 어찰을 가지고 영상의 집을 오갔으니 이때에 차를 올려서는 안 됩니다.” 별감은 소매 속에 있는 어찰을 내어 보여주었다. 누차 왕복한 어찰의 글씨 굵기가 서까래 같았다. 그래서 미처 차도 올리지 못하고 특명이 내려 충청감사로 나가게 되었다. 내가 송강을 만나던 날 저녁에, 구봉f20h이 영상 이산해에게 갔는데 새벽녘에 돌아와서 말했다.

“영상이 죽어가는 형상을 하고 수심을 하며 답답해하기에 그 얼굴이 이상한 것을 보고 괴이히 여겨 묻기를, ‘얼굴이 왜 이러냐?’고 했더니, 영상이 대답하기를, ‘내가 죽겠다. 계함은 그렇지 않은데 어떤 장자(長者)가 꼭 나를 죽이려고 하니 내가 죽게 생겼다.’고 했다는 것이다. 구봉이 “어찌 그럴 리가 있겠느냐?”고 하니, 이산해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에 있어도 밖에서 하는 일을 모르는 것이 없다.”고 했다. 이산해 부자는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엉뚱한 말로 궁궐(宮掖)f21h을 통해 동요 이간질시켰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구봉을 통해서 자기가 모든 기미를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하여, 구봉으로 하여금 우계나 송강에게 통보하게 해서 하려는 일을 중지하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구봉이 이산해의 집에서 돌아와 나에게 알려주므로 내가 말했다.

“어제 새벽에 송강을 찾아갔는데 그가 한 말이 이 말과 맞으니, 이산해가 반드시 그 기미를 안 것입니다.” 이산해가 말하는 ‘한 장자(長者)’란 우계를 가리킨 것이다. 마침내 이 일(세자책봉)을 청한 일 때문에 (공은) 참소를 당하여 낭패당하고 강계(江界)로 귀양가서 위리(圍籬)까지 되었다.

위리 속에 있으면서 글읽기를 그치지 않았는데, 대학 소주를 외워서 위리(圍籬)한 긴 나무를 하얗게 깎아서 다 썼다.

기해년에 유대정(兪大禎)f22h이 신경숙(申敬叔)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홍로(李弘老)f23h와 두터운 교분이 있었는데 신묘년에 내가 한림이 되었을 때 이홍로가 좌랑으로 상중(喪中)에 있으면서 나를 보자고 하기에 만나 보았더니, 그가 하는 말이 자기가 좌상 정철을



체포하려 한다고 했다. 내가 어떻게 체포하느냐고 했다. 그러자 이흥로가 ‘체포할 만한 일이 있다. 내가 대동찰방이 되었을 때 김공량(金公諒)f24h이 역마를 빼내 나라에 바치고자 하여 (정철에게 눈감아 달라고) 무명배 12동을 정철에게 주었는데, 그로 인해 임금께서 (역마를 받고) 아주 좋아하시어 즉시 은대(銀帶)를 하사하셨다.’라고 하면서 벽 위에 걸려 있는 것을 가리키며, ‘이 은대가 바로 그 은대이다.’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그럴더라도 어떻게 정철을 체포할 수 있느냐?’고 했더니 흥로가 말하기를 ‘또 체포할 만한 일이 있다. 여기에 어찰이 있다.’고 하면서 책갑(冊匣)을 열어 내보이려고 한 것을 내가 손을 저어 말리며, ‘내놓지 말게, 내놓지 말게. 다른 사람은 아무리 그럴지라도 공은 그래서 안 된다.’고 했는데 그 뒤에 안덕인(安德仁), 이원장(李元長), 이진(李璡), 윤탕(尹宕), 이성경(李晟慶) 등에게 부탁하여 상소했다.

흥로가 또 말하기를 ‘아계가 신성군(信城君)f25h을 추대하여 장차 세자로 책봉하려고 하니 국사는 우리가 해야지 타인과는 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내가 깜짝 놀라 속으로 생각하기를, ‘꼭 이 사람과 절교를 해야겠다. 이런 농과 사귀었다가는 뒷날 반드시 큰 화를 당하고 말겠다.’라 하고 친교를 끊었다. 나중에 육품(六品)을 벗어나 이천(伊川) 수령으로 나가게 되었을 때에 흥로가 상복을 벗고 동문 밖으로 전송을 나왔다. 모든 사람이 모두 술을 돌렸는데 흥로가 술잔을 건네므로, 내가 부채를 내저어 그 잔이 땅에 떨어져 버렸다. 그래서 말하기를 ‘공과 친교가 이미 끊어진 것을 공도 이미 알지 않는가?’ 했더니 좌우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흥로가 조정에 있을 때에 한 말이요, 죄를 당한 뒤가 아니다.

유대정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다.

임진년(선조 25, 1592)에 공이 정주(定州)의 빈청(賓廳)f26h에 있었는데 구사맹(具思孟)f27h, 구성(具晟)f28h이 왕자와 함께 숙배를 하자 김빈(金嬪)이 주찬을 보냈다. 구사맹 부자가 (주찬을) 미루어 양보하고 공의 앞으로 밀자 공이 말하기를 “이 주찬은 재상된 사람이 먹을 것이 못됩니다.” 하고 일어나서 자리를 피했다. 이로 인해 양호(兩湖)f29h의 체찰사로 나가게 되니 비록 동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모두 공이 처하는 바가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정주에 있을 때 공이 유성룡에게 말하기를, “공이 나하고 일을 같이 하다가 나를 어려운 지경에 빠뜨려 놓고 한번도 찾아와 묻지를 않으니 다른 사람과 일을 함께 한 사람이 이럴 수가 있소?” 했다. 그러자 유성룡이 대답하기를

“나도 영공이 비난할 줄은 압니다. 다만 나를 너무나 의심한다고 들었기 때문에 감히 찾아보지를 못했소.”라고 했다. 정주에 있을 때에 공이 유성룡에게 물었다. “이발의 노모와 어린 자식을 왜 죽였소?” 유성룡이 말하기를 “영공이라면 그 죽음을 구할 수 있었겠소?” 했다. 공이 대답했다. “나라면 죽음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유성룡이 다시 묻기를 “공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했다.

정유년(선조 30, 1597) 봄에 김수(金睟)가 호조판서가 되었다. 내가 정랑으로 동행하여 양호(兩湖)에 갔는데 하루는 김수가 나에게 말했다. “기축년(선조 22, 1589)에 내 아내가 말하기를 ‘정철을 남들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니 이제 보니 그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꼭 그런 때에 들어온 그 의도가 그때에 자기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겠소?’

그래서 그는 옳은 사람이 아닌 줄 압니다.’라고 했다.”는 것이다.

내가 대답하기를, “내 뜻도 또한 그랬었습니다. 당초 역적의 일이 터졌을 때에 정철이 숙배를 하려고 나를 불러 상의를 하기에 내가 강력히 말리며 ‘이런 때에 숙배를 한다는 것은 마치 기회를 노린 듯한 느낌을 주니 좋지 않습니다.’ 했더니, 정철이 말하기를 ‘그대의 말은 혐의를 피하자는 것이다.

내가 중신이 되어 가지고 역적이 임금을 해코자 하는 때에 이 변을 구경만 하고 나가지 않는다면 어찌 신하의 도의라 하겠는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김수가 말하기를 “송강의 말이 옳다. 내가 만약 그때를 당했을지라도 당연히 숙배를 했을 것이다. 송강이 한 일이 잘못이 아니다.” 했다.

김수가 이어 말하기를 “기축년에 아계의 집에서 나에게 전해오기를 ‘정철이 나와 그대를 죽이려 한다.’고 자꾸만 겁을 주므로 내가 ‘정철이 무엇 때문에 나를 죽이려 한단 말인가?’ 하고 의심하여 정철에게 찾아가서 그 안색과 언행을 살펴보았으나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아서 그것이 거짓인 줄을 알았다.

그의 뜻은 아마도 나와 동반해서 정철을 얻어 넣으려는 것이었다.”고 했다. 그리고 이조(吏曹)를 논책하려 한 말은 이희삼(李希參)이 전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희삼이 우계의 집에 갔다가 우계가 송강과 상의하는 말을 듣고 이산해의 집에 전한 것이니 양공(兩公)이 비밀을 유지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내가 김공에게 말했다. “이성중(李誠中)이 아는 별감(別監)이 있을까요?” 그러자 그가 “있겠지요!”라고 했다.

내가 “경인년(선조 23, 1590)에 별감이 어찰을 가지고 이의정(李議政)의 집에 왕래한 일을 공도 들었습니까?” 하자, 또 대답하기를 “그건 못 들었다.”고 했다. 그리고 “이성중이 부제학이 되어 차(筓)를 올리려고 이미 정본(正本)까지 써 놓고 미처 올리지 못한 채 충청감사로 나가는 바람에 내가 대신 부제학이 되어 곧 차를 올렸다.”고 했다.

동인이 서인을 심히 미워하여 기어코 넘어뜨리려고 한 데는 그 유래가 오래 되었다. 갑신년(선조 17, 1584)에 송언신(宋言愼)f30h이 전라순무어사로 나주에 가서 기효증(奇孝曾)에게 말하기를, “서인의 뜻은 흥녕군(興寧君)에게 있고 지금의 임금에 있지 않았다.” 하니 그 말이 극히 흉악하고 참혹했다.

그러자 이발의 무리가 근거 없는 험한 말을 조작해서 궁중으로 흘러들게 하여 서인을 위태로운 지경에 빠뜨림으로써 임금이 심의겸(沈義謙)f31h을 싫어하게 하고 그를 배척하여 조정에 들지 못하게 했다.

송언신이 성상소(城上所)f32h 관원이 되어 심의겸 일파를 일일이 해아려 박순(朴淳), 박응남(朴應男), 이후백(李後白), 선군자(先君子), 윤두수(尹斗壽), 윤근수(尹根壽), 정철(鄭澈), 정유일(鄭惟一), 구봉령(具鳳齡), 구사맹(具思孟), 신응시(辛應時), 이해수(李海壽), 홍성민(洪聖民) 등 수십 명을 계(啓) 하였다. 그 뒤에 이발이 대사간이 되어 심의겸의 무리에서 누락되었다 하여 이이(李珥), 성혼(成渾)을 첨가해 계달(啓達)했다. 정인홍(鄭仁弘)f33h이 장령(掌令)이 되어 심의겸을 논하여 파직시킬 때에,

아뢰기를 “심의겸이 윤두수, 윤근수, 정철 등과 함께 서로 결탁하여 복심하고 형세를 엿본다.”고 했고, 허봉(許筠)은 율곡을 논죄하여 차(筓)를 올리기를, “그 뜻이 장차 무엇을 하려 했겠습니까?” 했다.

율곡이 구봉에게 말하기를, “이번에 내가 죄를 당하게 된다면 저들은 공신이 되려 하리라.” 하자 구봉이 “어찌 그걸 아는가?” 했다. 율곡이 말하기를 “그 형태가 이미 드러났다. 이준경(李浚慶)f34h으로 우두머리를 삼고 있어 그들 의론의 윤곽이 이미 뚜렷해졌다.”고 했다. 신묘년(선조 24, 1591) 공이 죄를 당했을 때에 임금께서 그 일파가 많음을 염려하여 서인들을 끝까지 배척하셨는데 심지어 조당(朝堂)에 방(榜)까지 내걸어 미워한다는 뜻을 보였다. 그러다가 임진왜란이 터지자 죄인들이 모두 방면되어 돌아왔는데,

오직 공만은 은혜를 입지 못하여 정여립 무리와 다름이 없었으니 온 나라 사람들이 그 무죄함을 억울하게 생각했다. 서도(西道)로 몽진하실 때에 송경(松京)의 사민(士民)들이 모두 억울함을 호소하니 그제야 비로소 방면되었다. 이 일은 반드시 그 까닭이 있었다. 계사년(선조 26, 1593) 공이 부경(赴京)f35h에서 돌아오자 임금께서 가만히 신집(申礫)에게 묻기를, “정철이 중국에 가서 동궁(東宮)을 세울 것을

도모했다는데 그 말이 사실인가?” 했다. 신집이 대답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밝혔고, 즉시 그가 친숙한 사람에게 그 말을 전했다.

병신년(선조 29, 1596), 정유년(선조 30, 1597)간에 홍가신(洪可臣)f36h이 홍주목사가 되었을 때에 구봉을 찾아와서 “정철이 체찰사가 되었을 때 아는 사람들을 큰 고을 수령으로 배치하여 장차 큰 뜻을 행하려 했다.”라고 말했다.

홍가신이 아무리 송강을 미워한들 어찌 감히 이런 흉악한 말로 남을 모함한다는 말인가. 그들이 사람을 모함하는 수단이 모두 이와 같았고 뒤에 와서 더욱 드러났다. 그들이 김공량을 통해서 은근한 참소(讒訴)와 고자질로 인빈(仁賓) 김씨(金氏)을 흔들었으니 궁궐에서의 일은 사대부의 알 바가 아니라서 감히 모두 쓸 수가 없다. 임진란(壬辰亂) 뒤에 왕자 부마(駙馬)가 김빈을 위해 연회를 베풀었는데, 달성위(達城尉)가 대범한 복수(復讐) 이야기를 하자 김빈이 “복수 같은 것은 말하지 말라. 나는 지금까지도 복수를 못하고 있다.”고 했다 한다. 이것으로 보면 김씨가 그때까지도 의혹을 풀지 못했던 것이다.

기유년(광해군 1, 1609) 겨울에 내가 회양 부사로 임명받아 아직 부임하지 않고 서울에 있을 때의 일이었다. 친구 심종직(沈宗直)이 강서의 임소로 가면서 정도사에서 묵고 있었는데 정시회(鄭時晦)가 나에게 그 절에서 함께 자자고 했다. 그래서 저녁 무렵에 갔는데 그곳에는 김창일(金昌一), 심종도(沈宗道), 심종침(沈宗枕), 심종민(沈宗敏), 심종직(沈宗直), 심종립(沈宗立)이 있었고, 또 모르는 사람 몇이 있어 어수선했다. 다음날 새벽에 김창일이 정시회에게 말하기를, “공의 의론이 옛날과 같지 않은데 그것은 어째서인가?” 했다. 정시회가 웃으면서 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어른의 말씀을 듣고 바꿨다.” 창일이 내 말을 들어보자고 했다. 내가 사람들이 번잡하니 뒤에 대답하겠다고 하려다가,

다시 생각해 보니 해야 할 말은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듣더라도 무서워할 것이 없겠다 싶었고, 또 말하지 않으면 굴복하고 연약한 의심도 주겠다 싶어졌다. 그래서 즉시 “송강이 낭패를 당한 것은 전적으로 세자책봉 사건 때문이었다.”고 하면서 내가 예전에 들었던 내용을 세세히 말해 주었다. 그리고 ‘어찰(御札)을 가지고 왕래한 별감(別監)의 일은 사놀이 상세히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종민이 “그 별감 이름은 김희수(金希壽)입니다. 내가 압니다.” 했다. 심종도가 물었다. “그렇다면 유상이 하려 했던 세자책봉은 잘한 일이오? 못한 일이오?” 내가 대답했다. “나는 처음부터 이미 잘한 일이라고 했소.” 이 말에 심종도는 다시 한마디도 더 하지 않았다. 그리고 김창일도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 기색을 살펴보니 내 말을 모두 믿고 실망하는 모습이었다.

계축년(광해군 5, 1613) 내가 화환(禍患)을 당했을 때f37h에 김창일이 자주 찾아와서 간곡한 정을 보여주고, 또 최명룡(崔命龍)을 보고 말하기를, “내가 지금은 김희원(金希元)과 친한 벗이 되었다.”고 했다. 그는 내 말을 사실로 믿고 감히 그르게 여기지 않았으며, 또 그의 소견도 예전과 달라졌었다. 그해 겨울에 심종도가 순창 군수가 되었다. 그는 전주로 내려가 부윤 강복성에게 말하기를, “정철의 일은 아마도 사론(士論)이 하나로 통일되었을 줄로 압니다만, 사류(士類)들 사이에 일종의 의론이 있거든 내가 하던 말로 하나하나 말해 주시오.” 했다. 강복성이 최명룡에게 심종도의 말을 전했다 한다.

유성룡이 북인(北人)들에게 논박당하여 한탁주(韓侂胄), 사미원(史彌遠)f38h에 비유되었다. 그리고 북인들은 (유성룡을) ‘마땅히 효수(梟首)하여 거리에 내걸어야 한다.’ 하였으며 또 ‘전원(田園)이 일국에 두루 있다.’고 했다. 그러자 유상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세상 사람들이 비록 계함을 미워해도 오히려 탐비(貪鄙)하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는데 (나는 이제 이 꼴을 당하니) 내가 계함만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였다. 내가 호조정랑으로 전라도에 있을 때 김수에게 말했다. “(내가) 하루는 송상(松相)을 찾아갔는데, 때마침 하인이 분발(分發)f39h을 바치자 송상이 받아 본 뒤에 나에게로 보여줬

다. 그것을 보니 사헌부에서 계하기를 금부(禁府)가 엄중하지 못하여 최영경(崔永慶)f40h을 자진(自盡)케 했으니 색랑청(色郎廳)을 파직시키도록 청한다는 것이었다.

내가 말하기를, ‘옥사란 말썽이 많습니다. 이런 일에는 사람들이 반드시 말하는 자가 있을 것인데, 처사를 이렇게 하니 개탄스럽습니다.’ 했더니 송강이 즉시 윤대헌(尹大憲)에게 편지 쓰기를 ‘이런 일을 어찌 노부(老父)와 상의하지 않고 쉽사리 말을 냈소?’ 하고 그 편지를 나에게 보여주고 보냈다. 그런데 그 답장에 ‘일이 이미 이에 이르렀으니 어떻게 합니까?’ 했다.” 그 뒤 임인년(선조 35, 1602)에 최영경의 일로 거짓 사실을 날조하여 우계를 논하게 되었는데, 윤의립(尹義立)이 논계하기를 아주 중하게 했다. 그러자 김수가 윤의립을 비난하기를, “내가 김장생에게서 송강이 윤의립에게 편지를 보낸 사실을 들었는데 영경의 일은 송강도 간여한 것이 아니라 하거늘 하물며 우계 성흔이 간여를 했겠는가? 어찌 계사(啓辭)를 그렇게 잘못하는가?” 했다.

그러자 윤의립이 심종직에게 “김판서는 김장생의 말을 믿었고, 나는 모르고 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때에 서헌기(徐玄紀)가 도승지로 입직했고 강첨(姜籤)이 역시 승지로 입번을 했는데 그 상황을 홍경신(洪慶信)이 와서 보았다. 강첨이 말하기를, “나도 정철과 윤의립 두 재상의 편지가 왕복한 사실을 안다.” 했다. 홍경신이 간 뒤에 강첨이 서헌기에게 그 말을 전했고 현기는 나에게 말하기를 “가회(可晦)f41h가 반드시 어르신을 불편하게 여길 것입니다.” 했다. 내가 “정철과 윤의립은 모두 나와 절친한 사이니 비록 가회에 대해서라도 말할 수 있다. 사실이 그런데 무슨 상관인가?” 했더니 현기가 말하기를, “가회 등이 그 계사를 숨기려고 감춰 버렸답니다.” 했다.

갑신년(선조 17, 1584) 가을에 마을 사람 서집(徐諱)이 술자리를 베풀고 사람을 초대했는데 교관(敎官) 박형(朴洞, 뒤에 洲로 개명함)이 주객(主客)이 되었고 그 문하생 십오륙 명이 모였다. 술이 어지간히 되자 박형이 문도들에게 말하기를, “지금 사람들은 정철을 소인이라고들 하는데 나는 모르겠더라. 그는 충청(忠淸)하고 효우(孝友)하고 강개(慷慨)한 사람이다. 어째서 소인이라고 한단 말인가?” 했다. 그러자 제생들이 윤삼빙(尹三聘)에게 “그대도 선생의 말을 듣게!” 했다. 윤삼빙은 묵묵히 한마디도 하지 않으니 제자들이 다들 그를 나무랐다. 그러자 윤이 말하기를, “당초 선생이 말씀하시기 전에 시비(是非)를 마음속에 이미 정해 놓고 있었다. 이제 말하지만 그 말씀이 옳은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 문도 중에서 오직 심경(沈憬)과 윤삼빙만이 시론에 의탁해 의론이 극히 편사(偏邪)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리 심하지 않았다.

경자년(선조 33, 1600) 내가 안성 군수로 있을 때, 김우옹(金宇顙)이 지나다가 두 번 들렀다. 율곡 선생 얘기를 하게 되어 내가 물었다. “공은 율곡, 우계와 절친하다는 생각을 합니까?” 김우옹이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어찌 곱을 리야 있겠소” 했다. 내가 곧 “양인과 모두 절친한 마음입니까?” 했더니 김공이 “내가 모르고 대답했구먼! 두 분과 어찌 절친한 마음이 없겠소. 나의 율곡에 대한 생각은 옛날과 다르지 않소” 했다. 내가 물었다. “우계와는 어떻습니까?” 김공이 말하기를, “우계는 의주에서 만나 보았는데 말마다 계함을 비호하니 틀렸어!” 했다. 내가 물었다.

“공이 계함을 그르다 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김우옹은 “기축년에 계함이 이발과 최영경을 죽인 일을 공은 모르오?” 했다. 그래서 내가 말했다. “이발은 처음 적의 공초(供招)f42h에서 나온 것을 계함이 계사(啓辭)f43h를 올려서 풀려나 원방유배(遠方流配)가 결정되었습니다. 이발은 정여립의 공초에서 자주 거론되었기 때문에 구하지 못하여 죽은 것인데, 계함이 그 일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최영경은 끝까지 구하려고 애를 썼는데 어찌 죽었다고 하십니까? 대저 역적의 옥사 같은 큰 일을 추관(推官)이 어떻게 임의로 처리합니까?” 그러자 김우옹이 말하기를, “내가 성주에 있을 때 (정철은) 복도(강

계)에 유배가 있었으니 이발을 구했다는 것은 알 수 없는 일ियो. 공이 계함과 사부(師傅) 사이도 아니고 부형도 아니니 구원해주려고 하지 마시오. 만세의 공론은 무서운 것이오.

나는 최영경, 이발 두 사람은 계함이 죽었다고 마음속에 확신하고 있소” 했다. 내가 물었다. “공이 생각한 것이 정말 옳을까요? 공도 또한 만세의 공론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공의 벗이 왜 이발의 노모와 어린 자식을 죽였을까요?” 김우옹이 말하기를, “나의 벗이라고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오? 유성룡을 말하오? 내가 유성룡을 옳다고 했소?” 했다. 내가 말했다. “기축옥사는 죄 없이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누가 계함이라고 해서 심분 옳다고만 하겠습니까.” 그러자, 김우옹이 말하기를, “계함을 유성룡과 어떻게 비하여 말할 수 있소.” 했다. 내가 말했다. “처리한 일이 옳으면 똑같이 옳다 하고, 그러면 똑같이 그르다고 해야 합니다.

유공은 공의 벗이기 때문에 대충 넘겨 봐주고 계함은 공이 미워한 사람이기 때문에 까다롭게 따지시는 것이니, 그래서 됩니까?” 했다. 김우옹이 말했다. “내가 계함을 왜 미워한단 말ियो?” (그후) 김우옹이 청주로 가서 한찰방(韓察訪)의 집에 머문 적이 있었다. 그는 나와 문답했던 말을 날날이 말했다. 한찰방이 물었다. “안성군수 김장생은 원래 인물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자 김우옹이 대답했다. “좋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는 나의 문생 민후건이 그 이웃집에 살고 있었는데, 와서 그 곡절을 전해주어서 알게 되었다.

정미년(선조 40, 1607)에 황사숙(黃思叔)이 부여에 와 머물면서, 연산으로 나를 찾아 왔다. 내가 말했다. “송강이 낭패를 당한 것은 공(황사숙) 때문인데 공은 왜 사람들의 말대로 송강을 업신여기는가?” 사숙이 말했다. “송강의 낭패가 어째서 나 때문이었던 말입니까?” 내가 말했다. “공이 정언이 되어 이산해 편이었기 때문에 산해가 심복을 이용하여 참소 이간질을 했고, 밖으로는 무뢰배들을 시켜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힘을 다해 공격했다. 그리고 참소 이간질, 근거 없는 말을 노골적으로 하지 않고 칭탁하여 말하기를 ‘정철이 법을 굽혀 최영경을 죽였다.’ 하여 죄인을 만들었다. 또 심지어는 사육과는 상관없었던 사람까지도 모두 송강에게로 돌렸다. 최영경의 옥사는 송강이 누차 계사를 올려 구해(救解)를 하였고 그를 재심문한 것도 송강은 간여한 바가 아니다. 감정을 품고 돌을 던지는 무리인들이 어찌 영경의 죽음이 실로 송강의 탓이 아님을 모르겠는가.

중요한 것은 사람을 모함하려는 덧과 함정을 만들자는 것이다. 그 까닭을 모르는 자는 여러 사람의 말에 휩쓸려서 같은 목소리로 외쳐댄다. 간혹 그 사실을 아는 유성룡 같은 사람도 임금의 비위를 맞추며 자리를 놓칠세라, 감히 다른 소리를 못하고 서로 치죄를 하니 온 조정이 모두 그르다 하여 마치 큰 죄라도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도 덩달아 화답하고 간혹 거기에 휩쓸림을 면치 못하고 있으니 심히 가소롭다. 이는 공(황사숙)도 보고 아는 내용이다. 송강의 낭패가 실은 공 때문이었는데 공마저 여러 사람에게 흔들려 비난하니 잘못이 아닌가?” 사숙이 말했다. “송강의 낭패가 왜 나에게서만 연유했다고 하오.

당초에 들어보니 임금께서 진노하시어 송강을 물리쳐 송강이 이미 파출(罷黜)이 되었고, 그래도 부족해서 홍여순(洪汝諄)을 대사간으로 삼아 죄를 더하려고 전한(典翰) 우성전(禹性傳)에게 가서 논의케 하자 우성전이 숨어버렸습니다. 다시 부제학 김수를 보고 죄를 논의케 하니 김수가 말하기를, ‘대신이 밖으로 쫓겨났으면 죄가 이미 중한데, 어찌 꼭 죄를 더 주어야 하는가?’ 하므로 홍여순이 즉시 상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명으로 김수를 경상 감사로 내보냈고 우성전도 송강의 무리라 하여 죄를 받았습시다. 김수와 우성전은 송강과 친한 사람도 아니요, 저들의 참소가 행해진 사유만 알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산해, 홍여순과 함께 사건을 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께서 그들도 좋지 않게 여겨 종신토록



득지(得志)를 못한 것입니다.”

구봉 송익필은 동인 이발 등의 미움을 받고 사지(死地)에 빠져 세상에 용납되지 않아 갈 곳이 없었다. 정철이 광주(光州)에 있을 때 가끔 그를 불러다 지내게 했는데 사람들이 그 의리에 감복했다. 나중에 정철이 재상이 되자 또 임금께 참소하는 사람이 있었다. “송익필이 정철의 집에 머물면서 유생들을 시켜 상소하여 재상들을 모해하고 또 조정을 원망하여 일통을 내고, 또 조헌(趙憲)을 시켜 상소하여 세자 책봉을 청하게 한다.” (송익필은) 결국 붙잡혀 국문과 형을 몇 차례 받고 풀려났다. 어떤 사람이 구봉을 위해 말해주기를, “송강의 집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되니 멀리 피하도록 하라.” 했지만 송공은 그 말에 따르지 않고 항상 출입했으며 송강도 초청하여 만나보기를 청하고 혐의하지 않았으니 범인으로는 미치지 못할 일이었다.

신해년(광해군 3, 1611) 교리(校理) 이경직(李景稷)이 와서, 그 부친이 어느 날 술자리를 베풀어 판서 서성(徐省)과 참판 정협(鄭協)f44h을 초청해 술자리를 베풀었던 얘기를 했다. 정협이 정철과 홍성민을 원망하는 말을 많이 했다. 그러자 서성이 그 말이 옳지 않다고 즉시 꾸짖으며 말하기를, “영감이 잘못 알고 있소. 정철과 홍익성 두 사람은 영공에게 큰 은덕을 베풀었거늘 어찌 원망을 하오? 영공의 집안에서 한 일이 옳소? 영공의 아우 정율(鄭慄)이 왜 죽게 되었소?” 했다. 정협이 즉시 갓을 벗고 일어나 절을 하며 말하기를, “원한을 돌릴 데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했다 한다.

대저 기축년 역적이 일어났을 때에 정언신(鄭彦信)f45h이 우상(右相)으로서 추국청에 있으면서 큰소리로 외치기를, “고발한 사람 몇 사람만 목을 베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하므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모두 깜짝 놀라고, 홍성민이 통분을 이기지 못했다. 이를 상소하게 되고, 임금께서 추관에게 물으니 김귀영(金貴榮)은 “왼쪽 귀가 먹어서 자세히 들지를 못했습니다.” 했고, 이산해는 어렵듯이 들은 것 같다고 했다. 정언신은 상소하여 그가 정여립과 친하지 않았다는 상황을 발명하고 또 한번도 편지를 통한 일이 없다고 했다. 그러자 임금께서 진노하시며 정언신이 정여립과 왕복한 서찰을 보여주며, “전날 삼공을 인견할 때에 언신이 앙천대소(仰天大笑)하며 여립이 반역하지 않은 사유를 말했고, 또 한 장의 편지도 통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이 열아홉 장의 편지는 누구 편지냐? 내가 눈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했다. 그래서 그날로 삼사(三司)가 정언신이 임금을 기망한 것을 논계하니, 즉시 그대로 윤택되었다. 송강 정철이 추국청에 말했다. “정언신이 비록 무식하나 몸이 대신의 위치에 있는데 갑자기 사사(賜死)하면 안 된다. 마땅히 형(刑)으로 자복을 받아낸 뒤에 죄를 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산해가 듣지 않았다. 다시 말하자, 그러면 입계(入啓)를 하자고 했다. 그러나 임금께서 허락을 않으니 다시 재계(再啓)를 올리자고 했는데 모두들 말이 없었다. 그래서 홍성민이 상세히 개유 드릴 것을 논의한 뒤에 입계를 하고, 일차 형을 받은 뒤에 다시 멀리 귀양 보낼 것을 청하여 겨우 죽음을 면한 것이다. 당초 정언신의 소장(疏章)은 정협 형제가 상의해서 지어 올렸는데, 부친이 죽게 되자 정율이 후회하고 한하다가 죽었다. 그래서 서현기가 ‘영공의 집안에서 한 짓이 옳았느냐?’ 한 것은 이것을 가리킨 것이다.

대체로 인품은 군자가 좋아하고 소인이 미워하면 좋은 사람이요, 군자가 미워하고 소인이 좋아하면 그것은 나쁜 사람이다. 정철 같은 사람은 김인후, 이이, 성훈, 선군자, 박순, 구봉령, 고봉 기대승, 신응시, 홍성민, 이해수 등 제군자가 좋아했고, 정인홍, 이발, 이산해, 이이첨, 이홍로, 이경전, 한효순, 허상, 홍가신, 송언신

홍여순, 신경희, 송선, 윤삼빙, 심경, 김우성, 임혁, 임연, 송응형 등이 미워했다. 이들이 헛된 말을 조작하여 사람을 불칙한 데 빠뜨리고 자기들의 공을 삼으려 했으니, 이제 와서 심술이 모조리 드러났다. 그

들이 송강을 투기하고 미워한 것은 당연하다. 송강이 군자라는 것은 변론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저들은 시세에 쫓아가 붙어 발신(發身)을 도모한 사람들이니 비록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한 들 송강에게 무슨 손상이 되겠는가?

송강은 몸가짐이 청렴 간결하여 수령들이 주는 것은 원래 모르는 사람이면 부채 하나라도 받지 않았고, 비록 아는 사람일지라도 붕우(朋友)가 아니면 꿀 한 되라도 받지 않았다.

평생 악을 미워하기를 심하게 하여 남의 잘못을 용납해 주지 못하고, 반드시 남들에게 얘기를 하곤 했기 때문에 원망을 하는 사람이 많았다.

송강이 부모 섬기기를 효성스럽게 하고 형제 대하기를 다정하게 하였으며 상장(喪葬) 제사를 반드시 예대로 하여 범인은 미치지 못하였으니 내(김장생)가 직접 보고 항상 탄미하곤 했다. 다만 주색(酒色)이 지나쳐서 벗어나지를 못했으니 이것이 흠이었다.

정철은 회포가 소통하고 호쾌하여 무슨 생각이 있으면 담아 두지 못하고, 반드시 밖으로 표현했는데 말이 호방하여 사람을 감동시키는 대목이 많았다. 다만, 대신(大臣)으로서 웅위(雄偉)하고 관홍(寬弘)하여 사람을 용납하는 도량이 없었다.

하루는 송강 정철의 옛 집을 찾아가 선생의 남긴 자취를 느끼고 선생의 후손을 찾아보았다. 얘기하던 중에 치공(耜功)이 책 한 권을 내보이면서 탄식하며 말했다. “이는 우리 선조 문청공의 장초(狀草)인데 사계 김장생 선생이 기술하고 아울러 쓴 것입니다. 그런데 종이 갈아먹고 흙 기운이 서려 습기 차고 자획이 뭉개져 거의 알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대가 어찌 나를 위해 수장(修粧)해 두어 오래 전해지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순히 한 집안의 행복일 뿐만 아니라, 또한 사문(斯文)의 행운도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러하겠다.”고 승낙했다. 두 분 선생(송강과 사계)의 한 글자 한 말씀이라도 오히려 후생들에게 감동을 일으키는데, 하물며 한 권 책이 병화(兵火)의 속에 없어지지 않고, 수 백년 뒤에 다시 나왔으니, 비로소 연못에 잠긴 주옥이 버려지지 않고, 벽 속에 감춰진 글이 마침내 나타난다는 것을 알겠도다.

이 글의 숨겨지고 나타나는 것도 또한 때가 있는 것이리라. 이에 소매 속에 넣고 돌아와 풀로 발라 첩자(帖子)를 만들어 읽어보니, 송강 어른의 유사(遺事)와 사계 어른의 수택(手澤)이 완전히 새로운 책으로 되었다. 어찌 아름답지 않은가? 그 득실(得失)의 전말(顛末)을 말하자면, 처음에는 기옹(畸翁)의 아들 리(洌)에게 전해졌고, 중간에는 리(洌)의 외손 박씨 성을 지닌 사람에게 잃어버렸고(넘어갔다) 나중에는 송강 어른의 후손인 재면(在勉)에게로 돌아온 것이다.

송정(崇禎) 후 삼 무진(戊辰, 순조 8년 1808) 중춘(仲春)의 하순에 쓰다.



[각주]

1) 송강 상공(松江相公) : 정철(鄭澈, 중종 31, 1536~선조 26, 1593) 호는 송강(松江), 자는 계함(季涵), 판관 유침(惟沈)의 아들. 을사사화 때 부친이 유배되었다가, 명종 6년(1551)에 특사되어 온 가족이 고향인 전라도 창평에 머물면서, 김윤제, 김인후, 양응정의 문인이 되어 10여 년간 학업에 전념하면서 기대승, 이이, 성훈 등과도 교류했다. 명종 16년(1561)에 진사시에, 다음해 별시문과에 장원하여, 지평(持平), 전적(典籍) 등을 거쳐 함경도 암행어사, 사간, 직제학, 형조, 예조판서, 대사헌, 우의정, 좌의정 등을 역임했다.

2) 가문의 화 : 을사사화(명종 1, 1545)를 말함. 명종의 외숙 윤원형이 인종의 외숙 윤임 일파를 제거하기 위하여 일으킨 사화. 명종이 즉위하자 윤원형이 권력을 잡고 윤임 일파와 계림군(桂林君) 유(瑠)를 죽이고 많은 관리들을 삭직시키고 유배보낸 사건이다. 정철은 만수이가 인종의 숙의(淑儀)가 되고 둘째 누이가 계림군(桂林君)의 부인이 되었는데, 을사사화로 계림군과 관련된 정철의 부친 유침이 귀양갔던 것을 말한다.

3) 기대승(奇大升, 중종 22, 1527~선조 5, 1572) : 자는 명언(明彦) 호는 고봉(高峰). 명종 13년(1558)에 식년문과에 급제 사관 집의 전한 우부승지 대사간 등을 지냈다. 32세 때에 이황의 제자가 되었으나 선학들을 뛰어넘은 학설을 제시했다. 그 중에서도 이황과의 사단칠정(四端七情)을 주제로 한 뛰어난 논변이 유명하다.

4) 김인후(金麟厚 중종 5, 1510~명종 15, 1560) : 자는 후지(厚之) 호는 하서(河西). 김안국의 제자로 성균관에 들어가 이황과 같이 학문을 닦고 중종 35년(1540)에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정자 부수찬 등을 지냈다. 을사사화 후에는 병을 이유로 고향 장성으로 돌아가 학문에 전념했다. 성경(誠敬)의 실천을 학문의 목표로 삼았으며 이기일물설(理氣一物說)을 주장했다.

1) 양화도(楊花渡) : 서울 마포 서남쪽 잠두봉 아래에 있던 조선시대의 나루. 삼진(三鎭)의 하나로 양화진영(楊花鎭營)이 있었으며, 양천에서 강화로 이어지는 중요한 나루터였다.

2) 이발(李潑, 중종 39, 1544~선조 22, 1589) : 자는 경함(景涵), 호는 동암(東菴). 제학 중호(仲虎)의 아들. 선조 1년(1568) 생원이 되고 1573년 알성문과에 장원하여 이조정랑 응교 전한 대사간을 역임했다. 조광조의 지치주의를 이념으로 왕도정치를 제창하여 기강확립에 힘썼으나, 동인의 거두로 정여립의 모반사건에 연루되어 장살되었다.

3) 공안(貢案) : 지방의 관아에 부과하여 수납할 연간 세금의 품목과 수량을 기록한 책.

4) 요역(徭役) : 나라에서 백성에게 무상으로 시키는 노동.

9) 이상(二相) : 이상(貳相). 의정부(議政府)의 찬성(贊成)을 이르는 말.

10) 고양신원(高陽新院) : 지금의 광주(廣州)에 있었던 별장 장순원(張順院). 조선 중종 때에 영의정을 지낸 장순손(張順孫)이 지은 것이다.

11) 정여립(鄭汝立, 1589) : 자는 인백(仁伯), 첨정 희증(希曾)의 아들. 명종 22년(1567)에 진사가 되고 선조 3년(1570) 식년문과에 급제, 예조좌랑 수찬을 지냈다. 원래 이이(李珥) 성훈(成渾) 등의 총애를 받았으나 동인들과 친히 지내며 이들을 비판하다 왕이 불쾌하게 여기자 벼슬을 그만두고 전주로 내려갔다. 그는 곧 대동계를 조직하여 모사(謀士)와 불평객의 세력을 규합하고 정감록(鄭鑑錄)의 참설을 이용해 민심을 선동하고 역모를 꾀했다. 선조 22년 이 사실이 누설되자 거사를 도모했으나 안악군수 이축(李軸)이 이 사실을 알고 고변해 관련자들이 차례로 잡히자 금구(金溝) 별장을 떠나 진안 죽도로 숨었다가 관군에 포위되자 자살했다.

- 12) 속배(肅拜) : 벼슬의 임명을 수락하는 절차.
- 13) 추관(推官) : 죄인을 추국(推鞠)할 때, 심문하는 관원.
- 14) 성훈(成渾, 중종 30, 1535~선조 31, 1598) : 자는 호원(浩原), 호는 우계(牛溪). 수침(守琛)의 아들. 17세 때 감시(監試) 초시(初試)에 합격했으나 신병으로 복시(覆試)를 치르지 못하고 학업에만 전념했다. 선조 때 학행으로 참봉 현감 지평에 계속 임명되었으나 취임하지 않다가, 임진왜란 중에 세자의 부름을 받고 우참찬 좌참찬을 역임했다. 이이(李珥)와 교분이 두터웠으나 학설에서는 퇴계의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을 지지했다.
- 15) 파루(罷漏) : 조선시대에 서울에서 통행금지를 해제하기 위하여 종각의 종을 서른 세 번 치던 일. 오경 삼점(五更三點)에 쳤다.
- 16) 공죄(公罪) : 공적인 잘못.
- 17) 유성룡(柳成龍, 중종 37, 1542~선조 40, 1607) : 자는 이현(而見), 호는 서애(西厓). 강원도 관찰사 중영(仲郢)의 아들. 이항의 문인으로 1564년 사마시를 거쳐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전적 이조좌랑 직제학 동부승지 대제학 경상도관찰사 병조, 예조, 이조판서,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을 지냈다. 이조판서로 있으면서 건저문제(建儲問題)로 서인 정철의 처벌이 논의될 때, 남인에 속해 있어서 동인의 강경파인 북인 이산해와 대립했다. 임진왜란 때에는 도체찰사(都體察使)로 군무를 총괄, 이순신, 권율 등 명장을 등용했고, 왕을 호종(扈從)할 때는 의주에 이르러 평안도 도체찰사가 되어 이여송과 함께 평양을 수복하는 등 왜적을 물리치는데 큰 공을 세웠다.
- 18) 건저(建儲) : 왕위를 계승할 왕세자나 황태자를 세우는 일. 선조 24년(1591)에 세자 책봉을 싸고 동인과 서인의 갈등이 있었다.
- 19) 이산해(李山海, 중종 33, 1538~광해군 1, 1609) : 자는 여수(汝受), 호는 아계(鵝溪). 내자시정(內資寺正) 지번(之番)의 아들. 명종 13년(1558) 진사시에, 명종 16년(1561)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정자, 응교, 부제학, 대사간, 대사헌, 형조, 이조판서, 대제학, 영의정 등을 지냈다. 1588년부터 우의정과 영의정을 거치면서 북인의 영수로서 정권을 장악하고, 1591년 정철이 건저문제를 일으키자 아들 경전(慶全)으로 하여금 정철을 탄핵케 해서 유배시켰다.
- 20) 구봉 : 송익필(宋翼弼, 중종 29, 1534~선조 32, 1599)의 호. 자는 운장(雲長). 서출로 벼슬은 하지 못했으나, 이이(李珥) 성훈(成渾) 등과 교제하며 성리학을 논하여 통달했고 예학에도 뛰어났다. 문장에도 능했으며 고양 구봉산에서 후진을 양성하여 김장생(金長生), 김집(金集), 서성(徐滄), 정홍명(鄭弘溟), 김반(金槃) 등 많은 학자를 배출했다
- 21) 궁액(宮掖) : 왕궁(王宮).
- 22) 유대정(兪大禎, 명종 7, 1552~광해군 8, 1616) : 자는 경휴(景休) 선조15년 문과에 급제하여 검열 이천현감 동지중추부사 황해도 관찰사 등을 지냈다.
- 23) 이홍로(李弘老, 명종 15, 1560~광해군 4, 1612) : 선조 때 인빈 김씨(仁嬪金氏)의 오빠. 누이가 세조의 총애를 받자 세도를 부려 선조24년(1591) 영의정 이산해와 함께 세자책봉 문제로 정철을 유배시켰다. 1592년 내수사별좌(內需司別坐)가 되고 임진왜란이 일어나 선조가 개성에 이르렀을 때, 백성들의 항의로 처형명령이 내리자 강원도 지방으로 도피했다.
- 24) 김공량(金公諒) : 선조 때 인빈 김씨(仁嬪金氏)의 오빠. 누이가 세조의 총애를 받자 세도를 부려 선조24년(1591) 영의정 이산해와 함께 세자책봉 문제로 정철을 유배시켰다. 1592년 내수사별좌(內需司別坐)가 되고 임진왜란이 일어나 선조가 개성에 이르렀을 때, 백성들의 항의로 처형명령이 내리자 강원

도 지방으로 도피했다.

25) 신성군(信城君, ? ~선조25, 1592) : 선조의 넷째 아들로, 이름은 우(翺). 인빈 김씨(仁嬪金氏) 소생. 선조 24년(1591) 서인 정철에 의해 세자로 책봉되려다가 동인의 반대로 좌절되었다.

26) 빈청(賓廳) : 조선 때 궁중에서 대신이나 비변사(備邊司)의 당상들이 모여서 회의하던 곳.

27) 구사맹(具思孟, 중종 26, 1531~선조 37, 1604) : 자는 경시(景時), 호는 팔곡(八谷). 유희춘, 이황의 문인. 명종 13년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정언 병조좌랑 사간 교리 좌찬성 이조정랑 공조판서 이조판서 등을 지냈다. 청렴결백하여 권문세가와 접촉을 피했으며 지경연사(知經筵事)를 지낸 후에 기로소에 들어갔다.

28) 구성(具晟, 명종 13, 1558~광해군 10, 1618) : 자는 원유(元裕), 호는 초당(草塘). 좌찬성 사맹(思孟)의 아들로 별시문과에 급제한 후에 예조정랑 정언 호조참판 대사성 등을 지냈다.

29) 양호(兩湖) : 호서(湖西)와 호남(湖南).

30) 송언신(宋言愼, 중종 37, 1542~광해군 4, 1612) : 자는 과우(寡尤), 호는 호봉(壺峰). 부사 율(律)의 아들. 유희춘, 노수신, 이황의 문인. 선조 10년(1577)에 알성문과에 급제하여 검열(檢閱), 정언(正言), 평안도관찰사, 병조판서, 이조판서 등을 지냈다. 1589년에 기축옥사 때에는 정여립과 가깝다는 이유로 부교리에서 파직되기도 했었다.

31) 심의겸(沈義謙, 중종 30, 1535~선조 20, 1587) : 자는 방숙(方叔), 호는 손암(巽菴). 청릉부원군(靑陵府院君) 강(綱)의 아들, 명종비 인순왕후(仁順王后)의 동생. 이황의 문인으로 1562년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병조좌랑, 교리, 지평, 좌부승지, 대사간, 이조참의 등을 지냈다. 그는 구세력을 대표하는 척신출신이지만 사람들에게 명망이 높았다. 이 무렵 김종직 계통의 신진세력 김효원(金孝元)이 정계에 등장하여 신구세력의 갈등과 대립으로 심의겸을 중심으로 한 구세력이 서인이 되고, 김효원을 중심으로 한 신진세력이 동인이 되어 동서분당이 발생했다.

32) 성상소(城上所) : 조선시대 사헌부(司憲府), 사간원(司諫院)의 벼슬아치가 대궐문 위에서 백관을 감찰하고 공사(公事)를 출납하던 곳.

33) 정인홍(鄭仁弘, 중종 30, 1535~인조 1, 1623) : 자는 덕원(德遠), 호는 내암(內菴). 조식(曹植)의 문인으로 이산해, 이이첨과 함께 대북(大北)을 영솔했다. 선조 6년(1573) 학행으로 천거되어 황간현감, 지평, 장령, 대사헌, 공조참판,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 등을 지냈다.

34) 이준경(李浚慶, 연산군 5, 1499~선조 5, 1572) : 자는 원길(原吉), 호는 동고(東臯). 부수찬 수정(守貞)의 아들. 중종 26년 신석문과에 급제하여 부수찬, 승지, 지제학, 부제학, 대사성, 대사헌, 병조판서,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 등을 지냈다. 1555년 호남지방에 왜구가 침입하자 전라도도순찰사로 출정하여 큰 공을 세웠다. 기성사림과 신진사류의 알력을 조정하려다 신진사류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동서분당이 있을 것이라는 유소(遺疏)를 올려 삼사(三司)의 규탄을 받기도 했다.

35) 부경(赴京) : 부경사신(赴京使臣). 중국의 경사(京師)에 가는 사신을 말함. 정철이 1593년 사은사(謝恩使)로 명나라에 다녀온 것을 말함.

36) 홍가신(洪可臣, 중종 36, 1541~광해군 7, 1615) : 자는 흥도(興道), 호는 만전당(晩全堂). 민순(閔純)의 문인으로 제자백가에 통달하고 시문에 뛰어났다. 명종 22년 진사시에 합격하여 강릉참봉(康陵參奉)이 되고 이후 예빈시주부, 형조좌랑, 지평, 형조참판, 강원도관찰사, 형조판서 등을 지냈다. 1589년 정여립의 모반사건이 터지자, 평소 정여립과 가까이 지냈다 하여 파직되었다가 1593년 파주목사, 이듬해 홍주목사가 되기도 했었다.

37) 화환(禍患)을 당했을 때 : 광해군 5년(1613) 대북파인 정인홍, 이이첨 등이 소북파를 제거하기 위하여 일으킨 계축옥사(癸丑獄事). 김장생은 계축옥사 때 누명을 쓰고 심문받았다. 그는 결국 무형의로 풀려났으나 관직을 사퇴했다.

38) 한탁주(韓侂胄), 사미원(史彌遠) : 송(宋)나라의 간신들. 한탁주는 영종(寧宗)이 즉위하고 오패후(吳太后)가 수렴청정을 하자 권력을 전횡하고 도학을 배척했다. 사미원은 나라가 혼란해지자 창의(倡義)하여 한탁주를 없애고 실권을 잡았다. 그리고 영종(寧宗)이 붕어하자 태자를 폐위시키고 이종(理宗)을 세웠다. 처음에는 한탁주의 실정을 바로잡는 듯했으나, 요직을 겸직하여 권력을 장악하고 나라를 어지럽혔다.

39) 분발(分發) : '分撥'이라고도 쓴다. 조보(朝報)를 발행하기 전에 각 관아의 하인들이 그 요점을 종이 쪽지에 적어 관원들에게 미리 돌리는 일.

40) 최영경(崔永慶, 중종 24, 1529~선조 23, 1590) : 자는 효원(孝元) 호는 수우당(守愚堂), 조식의 문인. 선조 6년 이조의 천거로 참봉 주부 도사 지평 등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사퇴하고, 선조 17년 교정청 낭관(敎正廳郎官)이 되어 경서훈해(經書訓解)의 교정에 참여하고 곧 낙향했다. 선조 22년(1589) 정여립 모반사건 때 그가 모반사건의 배후자 길삼봉(吉三峰)이라는 무고로 투옥되었다가 석방되었으나, 다시 정철의 국문을 받다가 옥사했다.

41) 가회(可晦) : 윤방(尹昉, 명종 18, 1563~인조 18, 1640)의 자. 호는 치천(稚川). 영의정 두수(斗壽)의 아들. 이이의 문인. 선조21년 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정자 정언 교리 이조좌랑 병조참판 형조판서 등을 지냈다. 1591년 아버지 두수가 당쟁으로 유배되자 관직을 사직하기도 했고 인목대비 폐위 때에도 정청(庭請)에 불참하고 은퇴하기도 했다.

42) 공초(供招) : 공사(供辭). 죄인이 범죄사실을 진술함. 여기서는 정여립을 문초하는 과정에서 정여립이 이발의 범죄관계 사실을 말했다는 얘기다.

43) 계사(啓辭) : 공사(公事)나 논죄(論罪)에 대하여 임금께 올리는 글.

44) 정협(鄭協, 명종 16, 1561~광해군 3, 1611) : 자는 화백(和伯), 호는 한천(寒泉) 우의정 언신(彦信)의 아들. 선조21년(1588)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검열 정자 장령 사간 이조참판 대사헌 등을 지냈다. 1589년 아버지가 기축옥사에 연루되어 유배지에서 죽은 뒤에 미관말직을 전전하다가 1599년 아버지가 신원된 뒤에 검상(檢祥)에 기용되면서 다시 관직생활을 시작했다.

45) 정언신(鄭彦信, 중종 22, 1527~선조 24, 1591) : 자는 입부(立夫), 호는 나암(懶庵). 예조좌랑 진(振)의 아들이요, 정협(鄭協), 정율(鄭慄)의 아버지이다. 명종 21년(1566)에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검열 호조좌랑 전라도도사 우부승지 병조판서 우의정 등을 지냈다. 기축옥사에서 연루되어 유배지에서 죽었다.

본자료는 행정안정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당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